

의안
번호

1233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3.9.)

창원시 장애인 보조금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3.9.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2. 26. 진형익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6. 2.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3.9.)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진형익 의원)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동반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이동권·접근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9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 나. 관계법령 저촉 여부: 해당 없음
- 다. 예산조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참고
- 라. 입법예고(2026. 2. 26. ~ 3. 3.):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서효인)

가. 제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상 보조건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건의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안 제2조) ‘장애인’, ‘장애인 보조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정의함.

안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건(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건을 말한다.
---------------	---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조례안 참고)

- (안 제4조) 상위법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¹⁾에 근거하여 홍보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제4조(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장소임을 알리는 공식 표지(스티커, 그림 문자 등을 말한 다) 또는 안내문의 제작 및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관계자나 시민의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의 제작 및 배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와 역할 및 대면 시 유의사항 2.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관련 법령·조례 및 이에 따른 준수사항
--	---

- (안 제5조) 안 제4조의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조례안 참고)

나. 검토 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동반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사유²⁾가 없는 한 과태료가 부과됨.

¹⁾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²⁾ 정당한 사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1. 「의료법」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2.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또는 갈식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출입 거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보조건을 일반 반려견과 혼동하거나,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인 ‘장애인’ 과 ‘장애인 보조건’ 의 뜻을 규정하였음. 제1호 ‘장애인’ 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하도록 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였음. 제2호 ‘장애인 보조건’ 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³⁾ 및 제30조⁴⁾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건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제3항이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 에 한하여 출입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법적 체계와 부합하므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장애인 보조건 종류(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청각장애인 보조건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지체장애인 보조건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치료도우미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장애인 보조건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표지(이하 “보조건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건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건으로 한다
-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보조건표지 발급 등)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건에 대하여 보조건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안 제4조는 법적 강제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1항제1호는 보조견 출입 가능 표지 및 안내문 보급을 명시하였고, 제1항제2호 및 제2항은 시민 행동요령 지침의 제작·배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의 실질적인 출입 보장 문화를 정착시켜 창원시의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동반 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조견 출입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6. 질의·답변요지: 기재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참고자료: 타지자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홍보 관련



장애인 안내견 출입가능 표지·안내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류경제도시 대전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장애인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

장애인 보조견 공공장소 출입?
당연한 권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장애인동반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 위반 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주의할 점

- 출입 막지 않기
- 보행 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
- 음식 주지 않기
-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 사진 찍지 않기
- 보조견 유도고리를 잡거나 밀지 않기

| 기타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42-270-4774

대전광역시
DAJEON METROPOLITAN CITY

고양특례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을 '안내견'이라 칭함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90조 제3항제3호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막지 않기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보행 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사진 찍지 않기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	보조견 유도 고리(Leash, Harness)를 잡거나 밀지 않기
음식 주지 않기	

❌ 먹여주면 안돼요! ❌ 만지면 안돼요! ❌ 사진 찍지 마세요!

시민의 행동요령